

영등포구의회  
제20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 
관한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4. 16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 
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61호로 2018년 4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 
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
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하  
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(안 제1조~제2조)

나.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 
지원 결정(안 제3조)

- 다. 생활안정지원, 간접지원, 피해수습지원 등의 지원기준(안 제4조)
- 라. 중복지원 금지(안 제5조)
- 마.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(안 제6조)
- 바.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(안 제7조)
- 사. 재난피해자에 대한 자금지급 방법 및 환수(안 제8조~제9조)
- 아. 재원의 확보(제10조)
- 자. 그 밖의 주요사항(안 제11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
  -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: 사회재난 발생 시 예비비 사용 등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17.1.17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,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

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음.

○ 주요 조례안 내용은

-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
-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
- 안 제5조에서는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중복지원을 금지하였고
- 안 제6조에는 생활안정지원 등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
- 안 제7조에는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
-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자금지원 방법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
-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규정하였고
-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등포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음

- 최근 화재·붕괴·폭발 등 크고 작은 각종 사회재난 발생이 빈번해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재난피해 수습 및 복구, 생계지원 등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및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이때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 위임 규정인 사회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사회 재난 피해 복구 및 지원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「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시 재원 확보 (예산 또는 기금)방안 및 국·시비 지원 여부, 생활안정지원의 구체적인 (지원항목 및 지원액 결정)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.

# 관 련 법 령

## ■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낙뢰, 가뭄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(이하 "국가기반체계"라 한다)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
**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**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군·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8.6., 2014.12.30.>

②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6., 2014.12.30.>

**제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**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

**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**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(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 다만, 제39조제1항(제46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8.6., 2017.1.17.>

1. 자연재난

2.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

② 생략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4.12.30., 2017.1.17.>

1. 사망자·실종자·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

2.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

3.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
4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의 자금 융자, 농업·임업·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
5.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
6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,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
7. 주 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產業)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8.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
9.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7.1.17.>

## ■ 『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

**제3조(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)**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.

1. 생활안정지원: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(이하 "재난피해자"라 한다)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

가.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

1)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·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

2) 농업·어업·임업 및 연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

다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

1)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

2)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

3)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

라.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

마.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

2. 간접지원: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

가. 농업인·어업인·임업인 및 연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

나. 농업·어업·임업 및 연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

다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

라.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

마.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

3. 피해수습지원: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

가. 공공시설의 복구

나.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

다.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

라. 합동분향소 설치·운영 등의 추모사업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(이하 "생활안정지원"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(이하 "피해수습지원"이라 한다)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.

## 제4조(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)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.>

## ■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·운영 조례』
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

☞ 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2.8.23., 2014.2.5., 2017.1.6.>

11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재난피해시설(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)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

가. 수해·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

나.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(단, 제설차량 구입, 습염식 제설시스템